

[별표 3]<신설 1994.9.24>

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(제11조제4호 마목관련)

구 분	시 설 기 준	비 고
1.유 출 방지턱	가.저장시설의 최대용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유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나.유출방지턱의 높이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. $H \times (A - a) > 0.5 \times Q$ ·H : 유출방지턱의 높이 ·A : 방지턱내의 바닥면적 ·a : 방지턱내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바닥면적 ·Q : 저장시설의 최대저장용량 다.방지턱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	방지턱 건축물
2.바 닥 처 리	가.바닥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.바닥에는 모래 또는 자갈등 흡수성이 강한 재료를 10센티미터이상 깔아야 한다.	
3.기 타	가.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 나.유류공급 또는 주유등을 방지턱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	